

정 관



주식회사 씨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씨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eegene, Inc. (약호 Seegene)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자 분석 상품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2. 유전자 상품화 사업
3. 유전자 탐색 상품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4.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5.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용역 서비스 사업
6.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동·식물 개발 및 판매 사업
7.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 사업
8.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 연구개발과 시약,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
9.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0.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 사업
11.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 사업
12.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및 임대, 판매 사업
13.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 사업
14. 의료기관 운영 및 컨설팅업
15.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등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출장소·사무소·연구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eegene.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3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주(1 주의 금액 5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 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및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8 조의 2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주식 액면금액의 9%로 한다.
- ④ 이사회는 발행시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발행시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

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동 존속기간 후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⑧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3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시장금리 및 우선주식에 대한 기 지급 배당금액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④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거나 회사가 상환기간 중 상환 결정을 한 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4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청구기간은 우선주의 존속기간 전일까지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전환우선주식 1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며,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전환우선주주의 지분율(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비례 지분율)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전환가액은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는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시가 등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신주의 수는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노하우의 제공, 업무제휴 등의 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 3 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0%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

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주식의 소각)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또는 금융기법의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 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 35 조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32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7 인 이하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이사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유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위원회)

- ①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고문 등)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및 자문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3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4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5 조 (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조 (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6 조 (이사의 의무) 제 3 항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0 조 (사업 년도)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 5 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회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년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 잉여금 처분액

제 5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4 조의 2 (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을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제 1 기 사업 년도)

회사의 제 1 기 사업 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0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12 월 23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5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